

제2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3.8.)

조례안,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 순 화]

목 차

1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7
3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4	거창읍 김용마을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6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2. 2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2. 24.

2. 제정이유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화재취약계층에게 지원 하던 주택용 소방시설을 전 군민으로 확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 리에 대한 거창군의 책임을 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현행)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변경) 거창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나. 주택용 소방시설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 1) 전 군민에게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지원
- 2) 화재취약계층 주택에 화재발생 시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지원

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 확대(안 제5조)

- 1) 지원대상: (현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

⇒ (변경) 거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

- 2) 우선지원 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홀로사는노인 등
- 라.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비용 지원범위를 정함(안 제6조)
- 1) 주택용 소방시설
 - 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마. 지원신청, 지원결정을 정함(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2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1. 29.~2. 18.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거창군 주택의 화재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일상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에서 지역의 화재예방” 을 명시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을 통해 군민의 주택화재 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2. 2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2. 24.

2. 제안이유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운영
- 나. 사업량 : 교통약자콜택시 차량 5대
- 다. 위탁대상 사무
 - 교통약자콜택시 위탁 운영(5대)
 - 교통약자콜택시 유지관리 및 운송사업 전반
- 라. 기 운영현황
 - 수탁기관 : (주)거창80번택시
 - 위탁기간 : 3년(2019.1.1 ~ 2021.12.31.)

○ 위탁차량

차종	차명	차량번호	연식	비고
중형승합	다뉴그랜드스타렉스 휠체어슬로프 왜건 모던	74라3712	2019	* 휠체어 슬로프 (경사판) 장착
중형승합	다뉴그랜드스타렉스 휠체어슬로프 왜건 모던	74라3713	2019	
중형승합	다뉴그랜드스타렉스 휠체어슬로프 왜건 모던	74라3763	2019	
중형승합	카니발 장애인차(슬로프) (기본차량 디럭스급)	76어8649	2020	
중형승합	카니발 장애인차(슬로프) (기본차량 디럭스급)	76어8651	2020	

○ 최근 3년간 차량 이용현황

- 2018년도 : 3,045명(1일 평균 운행횟수 9.6)
- 2019년도 : 2,809명(1일 평균 운행횟수 8.8)
- 2020년도 : 3,446명(1일 평균 운행횟수 9.4)

마. 운영계획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업체 선정방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제반시설, 이동편의증진 기여도, 법령 또는 지시사항 준수여부 등 세부 선정기준을 별도 정하여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조

○ 위탁기간 : 3년간

○ 운행시간

- 일, 월 : 7~22시,
- 화, 토 : 8시~23시
- 수, 목, 금 : 7시~23시

○ 운행구역 : 관내,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구광역시 편도 운행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장점

- 법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교통약자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대처 등 효율적인 운영 가능

나. 향후일정

- 위탁업체 모집 공고 : 2021. 10월중
-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2021. 10월중
- 위탁업체 선정공고 및 이용요금 고시 : 2021. 11월중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1. 11월중
- 위탁 운영 : 3년간(2022. 1. 1. ~ 2024. 12. 31.)

다. 소요예산

- 위탁운영비 : 연간 232,700천원(인건비, 차량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 증가)
※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액 변경가능

5.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사회적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하는 사항으로,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운영)에 대하여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에 따르면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자치사무인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의 운영과 관리는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과 관리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과)

(제정) 1999.07.15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일부개정) 2013.06.12 조례 제2138호
(일부개정) 2014.05.28 조례 제2192호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45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2020. 6. 9.>
-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1.]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경제교통과)

(제정) 2011.08.08 조례 제2049호
(일부개정) 2015.12.30 조례 제2306호
(일부개정) 2016.07.20 조례 제2328호 타조례개정(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6.7.20.)
(일부개정) 2018.10.31 조례 제2457호 타조례개정
(전부개정) 2019.07.01 조례 제2525호

제6조(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운영)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시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④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⑥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참고자료] 이용대상 관련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24] [국토교통부령 제719호, 2020.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한다. <개정 2019. 7.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전문개정 2012. 11. 30.]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30., 2019. 7. 5.>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30.>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 11. 30., 2019. 2. 8.>

④ 삭제 <2012. 11. 30.>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경제교통과)

(제정) 2011.08.08 조례 제2049호
(일부개정) 2015.12.30 조례 제2306호
(일부개정) 2016.07.20 조례 제2328호 타조례개정(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6.7.20.)
(일부개정) 2018.10.31 조례 제2457호 타조례개정
(전부개정) 2019.07.01 조례 제2525호

제7조(이용대상자)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2. 2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2. 24.

2. 제안이유

항노화힐링랜드를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위탁 운영
- 나. 위치 :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830(항노화힐링랜드 일원)
- 다. 사업비 : 86,836천원(국 43,418, 도 13,025, 군 30,393)
- 라. 사업량 : 숲해설가 1명, 산림치유지도사 2명
- 마. 시설현황
 - 자연휴양림 : Y자형 출렁다리, 자생식물원, 견암폭포 등
 - 치유의 숲 : 무장애숲길, 산림치유센터, 숲체험장, 명상숲길 등
- 바. 위탁대상 사무 : 산림서비스(숲해설·산림치유) 기획·운영
 - 산림서비스(대면 및 비대면 병행) 신규개발 및 홍보물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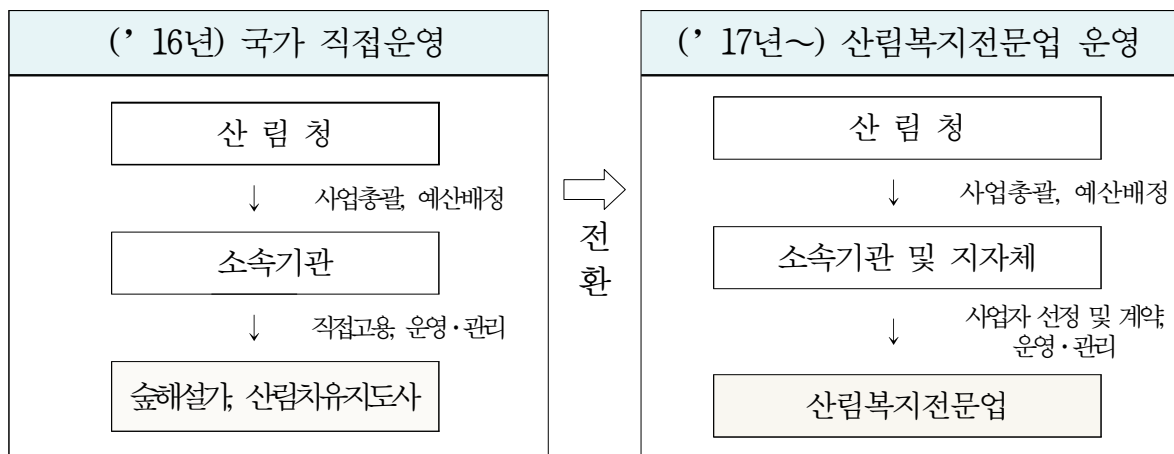
- 전 연령층 맞춤형 산림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운영, 설문조사(피드백) 및 결과를 통한 효과 분석
 -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찾아가는 숲 교육 등 대체프로그램 운영
- 사. 위탁기간 : 2021. 4. ~ 12. (1년 이내) ※ 국·도비 예산확보 신규사업
- 아. 향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사업규모 및 과업목표 설정)
 - 사업자 선정(사업공고 접수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협약체결, 사업수행 및 평가환류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위탁(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간분야 활성화

〈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으로 전환 〉



5. 관계법령

-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및 제20조(지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향노화힐링랜드를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관리 및 운영능력을 갖춘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업체를 선정, 민간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등)에는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대한 지원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 또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및 제20조(지원)에 의하면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배치하여야 하는 의무규정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을 두고 있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3 제1항(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에 따르면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자치사무인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 아울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산림복지전문업 업체의 숲해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및 관리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
-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운영 및 관리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 계 법 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 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 ③ 산림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⑦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2. 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자
- 4.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
- 6.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운영계획 수립)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치유의 숲의 일반현황
- 2. 치유의 숲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3.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계획
- 4. 산림치유지도사 배치계획

제9조(프로그램 운영)

- ① 운영·관리자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다.
- ③ 운영·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산림치유 환경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계획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 위임 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

의 예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거창읍 김용마을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2. 2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2. 24.

2. 제안이유

-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중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마을소득 증대 및 공동기금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명 :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
- 사업자 : 김용마을회 대표 김 성 대
- 사업기간 : 2021년 5월 ~ 11월(7개월간)
- 발전용량 : 19.9kw
- 사업비 : 45,000천원(군 40,500 자부담 4,500)
- 연간수익 : 5,000천원/정도
- ※ 수익금 사용 : 김용마을 번영을 위한 제반사업 및 주민복지증진과 화합도모 등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업에 사용(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나. 추진사항

- 2020. 10. : 국비 공모사업 선정

다. 재산의 표시

위 치	면 적	태 양 광 설치면적	용 량	사용허가신청자
거창읍 양평리 338-5(주차장)	812m ²	100m ²	19.9kw	김용마을회 대표 김 성 대

라. 향후 추진계획

- 2021. 5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원상복구 계획 접수(환경과)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후 사용료 부과 및 원상복구비 예치
- 2021. 11. : 공사 완료 후 보조사업 정산(경제교통과)

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제26조
-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 제4항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한 융복합지원 사업으로 공유재산 부지에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마을 주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7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받은 재산관리관은 관련 법령내용을 검토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 따라서 공유재산 부지에 대한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 영구시설물 축조와 사용수익·허가는 동의함에 따른 관련 규정상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② 법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7.>

[전문개정 2009. 4. 2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의 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7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